

한민족어문학회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7장 편집 및 심사'에 따라 편집위원 및 심사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 자격)

1. 본 학회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가입 회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에서 발표 또는 지정 토론자로 참가했을 경우도 허용한다.
3. 필요한 경우 가입 회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투고가 가능하다.
4. 심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임원진의 논문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투고 범위)

1. 본 학회의 논문은 국어학(國語學)·국문학(國文學)과 유관(有關)한 것이어야 한다.
2. 외국 논문의 경우에도 국어국문학(國語國文學)과 연계성을 가져야만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방법)

1. 논문 투고

- 1) 논문 투고시에는 한글 파일로 작성된 논문과 저작권양도확인서, 연구 윤리 협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확인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emunhak.com>)의 논문투고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작권양도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권리 일체를 본 학회에 이양하는 데 동의함을 서약해야 한다.

- ① 저자는 본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② 본 논문은 과거에 다른 서적(단행본,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로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저자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④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
- ⑤ 저자는 본 논문이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지인 『한민족어문학』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행사에 관한 권리 일체의 사항을 한민족어문학회에 이양한다.

3) 연구 윤리 협약서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 윤리를 이행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 ① 논문 투고자(주저자, 공동저자 등)는 『한민족어문학』의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따

라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② 본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후 게재될 예정의 논문이 아니며 중복 투고한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본 논문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표절, 위조, 변조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 ④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 투고자는 한민족어문학회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4) 논문유사도검사 결과확인서

본 학회의 논문 투고자는 논문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논문유사도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게재료 및 심사료

- 1)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2)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논문의 경우 십만(100,000)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20만(200,000)원, 대외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30만(3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 3) 비회원의 경우 회원으로 승인 절차에 따라 입회비 일만(10,000)원과 당해 연도 회비 삼만(30,000)원을 납부하고, 투고규정 제4조 2-1)에 따라 게재료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게재 논문 분량이 최종 출판 인쇄면 기준으로 25쪽을 넘을 경우 추가 게재료(쪽당 일만(10,000)원)를 필자가 납부해야 한다.
- 5) 심사료는 육만(60,000)원을 납부한다.

3. 마감 일자

본 학회의 논문 투고 마감 일자는 1분기는 1월 31일, 2분기는 4월 30일, 3분기는 7월 31일, 4분기는 10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일자

본 학회의 학술지 발행 일자는 1분기는 3월 31일, 2분기는 6월 30일, 3분기는 9월 30일, 4분기는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 표시

- 1) 투고자는 논문에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예: 홍길동/○○대학/부교수, 성춘향/○○대학/강사)
- 2) 논문이 공동저작인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기재하며, 모든 공동저자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표기한다.
- 3) 본 학회는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에 관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제5조 (논문 체제)

1. 원고분량

최종 출판된 원고의 분량은 25쪽(논문 작성 양식 기준) 이내로 하되, 35쪽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작성 순서

논문제목, 부제목, 필자명(각주에 소속 기관, 직위 표시), 차례,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필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밝힌다.

3. 모양/편집용지

- 1) 용지종류: 사용자정의, 폭 153mm, 길이 225mm
- 2) 용지여백: 위 19.5mm, 아래 28mm, 왼·오른쪽 24mm, 머리말 13.5mm, 꼬리말 0mm, 제본 0mm

4. 모양/글자모양

- 1) 크기: 논문제목 14, 부제목 10.5, 필자명 11, 각주 9, 인용문 9.5
- 2) 글꼴: 논문제목(신명견명조), 저자명, 주제어(신명중고딕), 국문초록, 본문, 인용문, 각주, 참고문헌(신명신명조). 단, 영문 글꼴은 HCI Tulip
- 3) 줄간격: 본문 160%, 참고문헌 150%
- 4) 장평: 95%, 자간 -7%

5. 본문: 글자크기 10.5, 들여쓰기 여백 2칸(1字), 줄간격 160%, 양쪽혼합 정렬

6. 번호 및 부호

1) 번호

- ① 대항목 번호: I., II., III., ... (글자크기 12, 신명중고딕)
- ② 중항목 번호: 1., 2., 3., ... (글자크기 11, 신명신명조)
- ③ 소항목 번호: 1), 2), 3). ... (글자크기 10.5 신명중고딕)

2) 부호

- ① 본문 중 인용부호: “...”
- ② 인용 속의 인용: ‘...’
- ③ 단행본 제목: 『 』
- ④ 논문, 시, 장, 절의 제목: 「 」
- ⑤ 인용시 필자의 중략: <...>

7. 예문 및 인용문

- 1)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댐
- 2) 글자크기 9.5, 왼쪽 13pt 오른쪽 여백 0, 줄간격 150%

8. 각주

- 1) 글자크기 9, 내어쓰기 10pt, 줄간격 130%
- 2) 표기 방식은 아래 <10. 참고문헌>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되, 인용된 면수를 기재함.

9. 국문 초록: 차례 다음 두 줄 띄우기

- 1) 초록 본문: 글자크기 9,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50%, 글꼴 신명신명조
- 2) 주제어: 4~8개 사이, 글자모양 신명중고딕
- 3) 분량은 500자(띄어쓰기 포함) 내외로 함.

10. 참고문헌: 본문 뒤에 2줄을 떼고 이어 씀(글자크기 12, 가운데정렬, 신명중고딕)
- 1) 참고문헌 내용: 글자모양(한글: 신명신명조, 영문: HCI Tulip), 크기 10pt, 장평 95%, 자간 -7%), 줄간격 150%, 두 번째 줄부터 (내어쓰기 40pt, 양쪽 정렬)
 - 2) 문헌배열 순서: 국문, 한문/영문 순으로 배열하고, 각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
- 예
- 차준호, 『현대 국어 의미론』, 대한출판사, 1997, pp.67-71.
 정수동, 「현대 국어 ‘가다’ 동사의 다의성」, 『언어과학』 제10집, 언어과학회, 1998, pp.55-75.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이기우 옮김, 『마음 속의 몸 :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기초』, 한국문화사, 1992, pp.45-51).
 Langacker, R., W. *Noun and Verbs*, Language 63, 1988, pp.36-43.
- 3) UCI, DOI 번호 표기: UCI, DOI가 있는 참고문헌은 UCI, DOI를 기입한다.
- 예 하신영, 「한국어 교육과 방언, 방언 악센트」, 『한민족어문학』 87집, 한민족어문학회, 2020, pp9-35. <https://doi.org/10.31821/HEM.87.1>
- 4) 학회지 논문의 경우 수록 권호를 ‘제00집’으로 표기하고, 발행처와 함께 반드시 논문의 전체 페이지를 기록(pp.00-00)
 - 5) 논문에 언급되지 않은 저서·논문 등은 참고문헌에 기재하지 않는다.
11. 영문 초록 : 참고문헌 다음 새 쪽에서 시작
- 1) 글자크기: 제목 10.5pt(진하게), 부제 10pt, 저자명 10pt
 - 2) 초록 본문: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50%, 글꼴 HCI Tulip(저자명만 신명중고딕)
 - 3) ‘제목-저자명-초록-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 4) 주제어: 4~8개 사이
 - 5) 분량은 500자 이상 1,000자(띄어쓰기 포함) 이하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저자의 동의 없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
12. 필자 소개
- 1) 영문초록 뒤에 2줄을 떼고 이어 씀.
 - 2) 글자 크기9, 한글: 신명중고딕, 영문: HCI Tulip, 양쪽정렬, 줄간격 130%
 - 3) 항목: 이름, 소속 기관, 직위, 전자우편(단, 2인 이상의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교신 저자를 밝힌다.)
- 예
- 홍길동
 소속: ○○대학교 ○○학과 부교수
 전자우편: hanemun@hanmail.net
- 성춘향
 소속: ○○대학교 ○○학과 강사
 전자우편: hanemun@hanmail.net

<부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의 규정은 폐기한다.
2. 이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